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 오픈 안내

건강보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,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요양기관에서 2022. 4. 1.부터「(신)요양기관정보마당」을 통해 요양비처방내역을 등록(OCS 연계 포함*)하면, 공단은 환자에게 처방전 등록번호를 전송하고, 환자는 처방전 등록번호를 준요양기관에 제시 후 급여품목을 구입(대여)하는 시스템입니다.

이와 관련, 전자처방전 등록 및 조회서비스 이용에 따른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환자가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.

* 요양기관정보미당을 OCS와 연계하면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.(연결시간 제한 없음) 프로그램 연계 시 해당 OCS 관리업체, 전산 담당부서에서 프로그램 개발 필요하며 연계 가이드 및 샘플은 공단에서 제공함.[(신)요양기관정보미당 죄측 상단 CCS개발자지원 사이트 접속]

자세한 내용은 (신)요양기관 정보마당(https://medicare.nhis.or.kr) →공지사항 '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 오픈('22.4.1)안내'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□ 요양비 처방전 등록 및 조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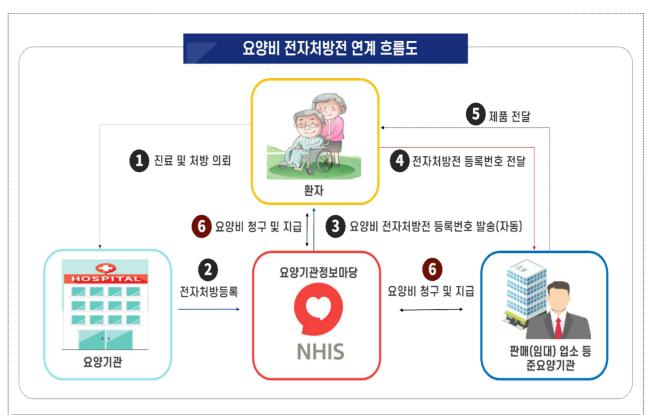
○ 요양비 처방전 등록

구분	요양비 처방전 등록	등록 처리 내용
요양기관 (약국 제외)	(신)요양기관정보마당 처방전 등록 및 경로	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(OCS 연계화면)에서 요양비 처방서식을 이용 처방내역 등록·조회 및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, OCS 연계모듈(MediConn)을 통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한 요양비 처방 내역을 전달 받을 수 있음 (경로) 요양비 > 요양비처방내역 > 요양비 종별 처방내역 등록

○ 요양비 처방전 조회

구분	요양비 처방전 조회	조회 처리 내용
준요양기관	(신)요양기관정보마당 처방전 조회 및 경로	요양기관에서 전산등록(발행)한 요양비 처방전의 처방정보 조회 가능. 단, 준요양기관은 환자가 처방전등록번호와 인적사항 제공 시 처방정보를 조회하여 환자(그 가족)에게 요양비 급여품목 제공 (경로) 요양비 > 요양비 처방내역 > 요양비 처방내역 조회





구 분	전자처방전 이용 및 조회 방법
요양기관 → 공단	 ▶ 요양비 전자처방전 발급 - 요양기관(의료진)은 요양비 수급자(환자) 진료 후 '요양기관정보마당'에 처방 내역을 등록(조회) 후 우리공단에 전자처방전을 전송 (경로) 요양기관정보마당(https://medicare.nhis.or.kr) > 요양비 > 요양비 처방내역
건보공단 →수급자	 ▶ 요양비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발송 - 공단 > 요양비 전자처방전 등록번호 알림톡 발송 > 수급자(환자) 알림톡 수신 ※ 모바일 번호 발송 순위 ① 처방전의 수진자 휴대전화번호 ② 요양비 청구위임신청서의 휴대전화번호 (SMS 수신동의 한 경우 만 수신 가능) ③ 요양비지급 청구서 및 급여대상자 등록신청서의 휴대전화번호
환자(그 가족) →준요양기관	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비 처방내역 조회 및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제시 후 제품구입(대여) - 공단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서 로그인 후 처방내역 조회 - (경로) 홈페이지(http://www.nhis.or.kr)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 > 요양비 처방전 조회 > '요양비 처방내역 조회' ▶ 「The건강보험」앱을 통해 요양비 처방내역 조회 - (경로) The건강보험 > 민원여기요 > 조회 > '요양비 처방내역 조회'
준요양기관→ 환자(그 가족)	→ 「요양기관 정보마당」을 통해 '요양비 처방내역 조회 후 환자(그 가족)에게 급여제품 제공 - 「요양기관 정보마당」 최초이용 시 회원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※ 약국 중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, 회원정보 변경 (준요양기관 회원 추가등록) 후 이용 - (경로) 요양기관정보마당(https://medicare.nhis.or.kr) > 요양비 > 요양비 처방 내역 > '요양비 처방내역 조회'

- ※ (전자처방이 가능한 급여품목)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(전극 포함), 자가도뇨 소모성재료, 인공 호흡기, 기침유발기, 산소발생기, 양압기, 당뇨병관리기기(연속혈당측정기, 인슐린자동주입기) * 만성신부전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「의료법」에 의한 처방으로 제외